

<p>능하다고 判斷되어 이를 解除하여 주기로 決定하였으며,</p> <p>둘째, 九老區 始興洞 1004番地 정준호가 提出하고 林承后議員이 紹介한 風致地區解除 要求는 隣接地域에 기계공구상가가 있고 風致 地區까지 商街化되어 있어 風致地區로서는 機能이 상실되어 있다고 判斷되어 風致地區 中 冠岳山 및 裸壠地地域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地域은 風致地區에서 解除하여 주기로 決定하였습니다.</p> <p>셋째, 銅雀區 黑石洞 186番地의 10 임인도 가 提出하고 金禹仲이 紹介한 銅雀區 黑石洞 170番地 一帶 風致地區解除 要求도 이 一帶가 이미 50年前인 1942년에 地區指定된 아래 周邊地形이 완전히 달라졌고 低所得市民의 不良住宅이 밀집되어 住宅改良도 못하고 있는 實情이며 이 一帶에 日帝때 지은 50 여채의 小型住宅은 봉괴위험이 있는 등 風致 地區로서의 保全이 이미 상실되어 있는 現況을 감안하여 이 地域도 地域實情에 맞도록 風致地區를 解除하여 주기로 決定하였습니다.</p> <p>넷째, 薦院洞 73番地 강길선이 提出하고 張精一議員이 紹介한 解除된 校用地 原狀還元 要求는 住民의 절실한 要求로 인정되나 現地域은 法律의으로나 豫算形便으로 보아 學校用地에서 原狀還元은 不possible하다고 判斷되어 이 請願은 受容이 不possible한 委員會 決定事項으로 處理되었음을 報告합니다.</p> <p>이상 報告드린 대로 우리 委員會에서는 地域與件上 住民의 要求가妥當한 것은 과감히 受容하여 주기로 하고 實情에 맞지 않는 것은 受容에서 제외기로 하였습니다. 아무쪼록 우리 委員會 決定事項이 本會議에서 採擇될 수 있도록 同僚議員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</p> <p>○副議長 趙貞順 그러면 始興3洞 風致地區解除 要求에 관한 請願 外 2件에 대하여 都市整備委員會에서 審查報告한 내용과 같이 市議會 意見으로 각각 採擇코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, 異議 없으십니까?</p> <p>(「없습니다」하는 議員 있음)</p>	<p>그러면 각각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>.....</p> <p>(參照)</p> <p>始興3洞風致地區解除要求에관한請願審查報告書</p> <p>1993.2. 都市整備委員會</p> <p>1. 審查經過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請願者: 九老區 始興洞 1004 석수빌라 2洞 115호 정준호 ○紹介議員: 林承后議員 ○接受日字: 1992.8.12(접수번호 46번) ○回附日字: 1992.8.21 ○上程日字: 第60回 臨時會 第2次 都市整備委員會(1993.2.24) 上程 議決 <p>2. 請願要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九老區 始興3洞 일원 79萬3千5百㎡(약 5,200세대, 16,000여 住民 居住地域)는 경수1번 50m 국도변 좌우에 위치한 地域으로 현재는 철재 및 產業用材流通商街가 건설 완공되어 1,200個 점포 및 2,400個의 事務室 등이 所在, 商街가 형성되어 유동인구도 적지 않은 실정임에도 계속 風致地區로 지정되어 있는 기존 老朽建物에 대한 増·改築이 침체되어 미관이 불량함은 물론, ○경수국도와 京釜鐵道 사이에 위치한 準工業地域내 소규모 영세공장들도 상습 침수로 인한 피해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増·改築에 따른 建蔽率適用이 불리하여施設改善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○增·改築 활성화를 통한 都市美觀 회복과 財產權行使에 不利益이 없도록 風致地區를 조속 해제할 것을 요구함. <p>3. 趣旨說明 要旨(林承后議員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1969年 4月 風致地區로 지정된 九老區 始興3洞 地域은 경수 1번 국도(폭 50 m)가 관통하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계와
--	--

<p>불어 있는 地域으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國家 主要 施設 및 보안 목표가 없는 다세대 密集住宅地域 • 경수국도 양쪽은 완전 상업지역화되어 있음. • 산업용재 流通商街와 철재상가가 위치하 고 있음. • 또한 1990年 11月 일부지역이 風致地 區 해제로 타 地域 住民과의 위화감 造成등 <p>동 地域의 風致地區 解除 民願은 그 타</p>	<p>당성이 있음.</p> <p>4.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(專門委員 宋在璣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風致地區 解除 요구한 始興3洞 지역은 京畿道와 인접지로서 京畿道 風致地區 전 폐율은 40%로서 시흥지구와는 차이가 있음. ○請願人은 風致地區 解除를 요구하고 있으 나 새로 제정될 區의 建築 條例로서 40%로 緩和하여 주는 것이 좋은지 현 지 확인후 處理 意見임. 								
5. 質疑 및 答辯 要旨(答辯者: 都市計劃局長 具停會)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2px;">질의 내용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2px;">답변 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○京畿道와 인접지 風致地區를 京畿道와 동일하게 緩和할 用意는 없나?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○改正된 建築法에 따라 區 建築條例로서 40% 완화가 가능할 것임.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○현지는 商街地域化되어 風致地區 유지가 불가능하다는데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○風致地區 지정 目的에 맞추어 가능한 保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○시내 風致 전체를 再檢討하여 解除 가 능한 곳은 시 자체로 解除할 方法은 없는가?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○1989年度에 일제히 정비하였기 때문에 지금 다시 再整備는 시기상조라고 思料 됨.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질의 내용	답변 내용	○京畿道와 인접지 風致地區를 京畿道와 동일하게 緩和할 用意는 없나?	○改正된 建築法에 따라 區 建築條例로서 40% 완화가 가능할 것임.	○현지는 商街地域化되어 風致地區 유지가 불가능하다는데	○風致地區 지정 目的에 맞추어 가능한 保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	○시내 風致 전체를 再檢討하여 解除 가 능한 곳은 시 자체로 解除할 方法은 없는가?	○1989年度에 일제히 정비하였기 때문에 지금 다시 再整備는 시기상조라고 思料 됨.	
질의 내용	답변 내용								
○京畿道와 인접지 風致地區를 京畿道와 동일하게 緩和할 用意는 없나?	○改正된 建築法에 따라 區 建築條例로서 40% 완화가 가능할 것임.								
○현지는 商街地域化되어 風致地區 유지가 불가능하다는데	○風致地區 지정 目的에 맞추어 가능한 保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								
○시내 風致 전체를 再檢討하여 解除 가 능한 곳은 시 자체로 解除할 方法은 없는가?	○1989年度에 일제히 정비하였기 때문에 지금 다시 再整備는 시기상조라고 思料 됨.								
<p>6. 討論 要旨 없음.</p>	<p>능한 상태이므로 地域現況에 맞게 風致地區 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만, 아직도 대지로 남아 있는 관악산 자연공원 인접 공대지는 解除地域에서 제외토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思料됨.</p>								
<p>7. 小委員會 審查內容 현지를 확인한 바, 인접지에 기계공구상 가가 있어 請願要求地域까지 상가지역화되어 있어 風致地區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.</p>	<p>창천동 100번지 일원 풍치지구해제요구에 관한 청원심사 보고서</p>								
<p>冠岳山 및 공대지 지역을 제외하고는 風 致地區를 解除할 수 있도록 청원 수용 건의</p>	<p>1993.2. 도시정비위원회</p>								
<p>8. 審查結果 小委員會에서 審查한 내용대로 관악산자락 공대지 地域을 제외한 나머지 풍치지역은 이를 해제하여 주기로 決議</p>	<p>1. 심사경과 ○청원인: 전정식, 서대문구 창천동 100- 99</p>								
<p>9. 少數意見의 要旨 없음.</p>	<p>○소개의원: 박상동의원 ○접수일자: 1992.10.21(접수번호 60)</p>								
<p>10. 기타 必要事項 없음.</p>	<p>○회부일자: 1992.10.22</p>								
<p>11. 意見書 請願要求한 始興3洞 風致地區는 준상가지 역화되어 사실상 風致地區로서 保存은 불가</p>									